

2024년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

“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
 기술보증기금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정규직 신입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 (채용인원) 총 95명

직 무	모집부문	채용인원	지원자격	직무기술서	근무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금융일반	27명	제한없음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특례	전국	
	지역 전문	충청권	3명		해당 지역 근무 가능자	해당 지역
		강원권	2명			
		호남권	3명			
	이공계	36명	이공계 중 한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특례	전국
	박사	6명	정보통신·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기계, 화학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			
	CPA·세무사	2명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보훈	5명	취업지원대상자				
전산	5명	제한없음	전산 [클릭]	부산		
법무· 채권관리	일반	5명	제한없음	법무· 채권관리 특례	전국	
	변호사·변리사	1명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총 인원		95명				

- 전형단계별 '모집부문' 단위 경쟁으로, 모집부문 간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단, 금융일반, 지역전문(충청권), 지역전문(강원권), 지역전문(호남권)은 각각 별개의 모집부문임)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모집부문(구분채용) 또는 타 모집부문(가점우대) 중 **선택지원 가능**
- **박사, CPA·세무사, 변호사·변리사는 가급적 해당 모집부문(구분채용)으로 지원 요망**
- 정보통신·데이터(박사) 해당 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정보(전자)통신공학, 통계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등 관련 분야
- 경영·경제(금융)(박사) 해당 분야 : 경영학, 경제학, 금융공학 관련 분야
- '박사' 모집부문은 반드시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등으로 학위취득 증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25년 2월에 한해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CPA·세무사' 모집부문은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 취득자,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자격증별 채용인원 구분 및 전형단계별 기준 차등 없음

2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학력* · 연령** · 성별 등에 제한없음

* 박사 모집부문 제외

** 단, 접수시작일 기준 기술보증기금 정년(만60세 이상)을 초과한 자는 지원불가

채용 확정(11월초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의 **금융일반**(지역전문 포함), **이공계**, **보훈** 및 '법무채권관리' 직무의 **일반** 지원자는 **아래 최저기준 이상 공인외국어성적 보유자**

* 외국어 성적은 상기 직무수행 시 글로벌 기술평가 및 국제 법무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

구분	TOEIC	TOEIC Speaking	NEW TEPS	TOEFL (IBT)	OPIc	JPT	HSK
점수	800점	130점	328점	81점	IM2	660점	5급

• **2022년 7월 9일** 이후 응시하고 **2024년 7월 8일(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등록된 **외국어 성적에 한하여**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시험별 성적유효기간 내 등록된 성적만 인정됨)

- 서류전형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이후 채용 전형에는 외국어성적 점수 미반영
- 입사지원 시 유효한 외국어성적이라도, 전형 중 외국어성적증명서 미제출(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불가 등 이유 불문) 또는 확인 불가로 판명된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 확정(11월초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9. 유의사항 참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전문 모집부문

공통사항 및 해당 권역 근무조건 외 기본요건 제한 없음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해당 권역 **즉시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
(단,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근무지)

지역전문 모집부문별 해당 권역 근무지 안내

* 충청권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강원권 : 강릉, 원주, 춘천

* 호남권 : 전북, 전남, 제주, 광주

3 전형단계별 일정

□ 전형단계별 일정



- 전형 절차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 (kibo.incruit.com)에서 확인
-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서류전형으로 5배수 선발 및 필기전형 면제
- 모집부문별 선발 배수에 따른 합격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상
- 서류 · 필기 · 1차 면접전형은 전형단계별 **제로베이스(Zero Base) 평가**
- 2차 면접전형은 필기전형 · 1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 '5. 전형절차 및 방법 중 □ 동점자 처리기준' 참고
- 필기전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등록(**미등록 시 응시 불가**)

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6. 21.(금) 14:00 ~ 7. 8.(월) 16:00 (전산접수 완료 기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kibo.incruit.com) 접수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 마감일은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입사지원서 수정 · 취소 불가**
- * '박사' 모집부문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제출

※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 시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직 · 간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유의
예시) 성별 · 신체조건 · 학력 · 학교명 · 연령 · 가족관계 · 출신지 · 혼인 여부 등
-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하더라도 **인정 불가**
- 입사지원서 **미기재 경력사항**은 추후 경력증명서 제출하더라도 **경력 불인정**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간 등 포함 반드시 기재하실 것)
- '9. 유의사항'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 FAQ 등에 유의하여 입사지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최종 지원하실 것

5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총 배점 100점)

- NCS기반 자기소개서(50점) · 교육사항(25점) · 자격사항(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
 - 서류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7.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참고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등급 처리**
 - 회사명 오기재, 동일 내용 복사,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 작성, 표절 등
- 교육사항은 모집부문별 **단일 분야** 교육사항에 대해 평가하며,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 전까지 이수 완료**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 '24년 2학기 수강과목 인정 불가, PASS OR FAIL 과목은 인정 불가
 - 직업교육(과목당 50시간 이상) 및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목 입력 가능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모집부문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외 법무채권관리 관련 교육과목도 입력 가능
 -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교육사항 평가 제외
- 자격사항은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합격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직무별 인정 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1' 확인
 - 자격사항은 5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다수 자격증 소지자는 고득점 자격증 순으로 3개까지 합산 인정하며 합산 방법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름(인정된 3개 이외의 자격사항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면접시 참고사항으로 활용)

□ 필기전형(총 배점 10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40점) ·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합산 점수 + 가점
 - 필기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7.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참고
-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필기전형 면제

구분	모집부문		평가과목 (출제범위)	유형	배점
(1교시) 직업기초 능력평가	필기전형 대상 모집부문 공통		NCS 직무능력검사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객관식	40점
(2교시) 직무수행 능력평가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	금융일반 · 지역전문 (경영/경제 중 택1)	경영 (중급회계, 재무관리, 경영학)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60점
			경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이공계	직무상황 논술평가 (금융시사, 기금 관련 이슈, 기술동향 등 직무 관련 주제)	논술형 약술형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전산	직무상황 논술평가 및 코딩테스트 (코딩언어: Java, Python, C++, SQL 중 출제)	논술형 약술형	
법무· 채권 관리	일반	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합 계					100점

- 입사지원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서울/부산)을 선택하고 최종 제출 또는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모집부문별 응시 예상인원과 입사지원서 先제출자 우선권 부여에 따라 부득이 희망 지역과 다르게 임의 배정될 수 있음
- 직업기초능력평가 배점(40점)의 50% 미만 득점 시 평가 합산 점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단, 필기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 예비합격인원 초과인 모집부문에 한하여 적용하고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포함한 점수로 평가)
- 출제범위는 평가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문제는 평가과목과 연계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금융일반, 지역전문) 모집부문은 경영, 경제 구분없이 직무수행능력평가의 조정점수를 적용한 점수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에 가점을 더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 (지원내용) 저시력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 이동 편의를 위한 저층 고사장 우선 배정, 대리마킹 담당대기 등
- (신청방법) 입사 지원 시 별도 신청

□ 1차 면접(실무자) 전형(총 배점 100점)

- 조직적합성(35점) · 직무적합성(40점) · 토론(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AI 역량검사(2차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구 분	평가 내용	배 점
조직적합성 면접	기금 문화적합도 평가	35점
직무적합성 면접	직무 지식 · 전문역량 평가	40점
토론 면접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25점
합 계		100점
AI 역량검사	종합적합성 분석	참고자료

- 평가 합산 배점(100점)의 60% 이하 득점(가점 포함)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 AI 역량검사 결과는 평가가 아닌 2차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AI역량검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2차 면접전형 응시 불가
- AI 역량검사 응시 방법은 추후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AI 역량검사 응시를 위해서는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PC 환경 등 필요

□ 2차 면접(임원) 전형(총 배점 100점)

- 종합적합성(50점) · 1차 면접전형(25점) · 필기전형(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종합적합성 면접 평가 : 조직적합도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
 - * 종합적합성 평가 배점(50점, 가점 포함)의 60%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 * 1차 면접전형과 필기전형 평가 점수는 각 25점 배점으로 환산 적용한 득점(가점 제외) 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 적용 항목	기 준
서류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자기소개서 → ③교육사항 → ④자격사항 → ⑤가점	고득점자 順
필기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직무수행능력평가 → ③직업기초능력평가 → ④가 점	
1차 면접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직무적합성 → ③조직적합성 → ④토론 → ⑤가점	
2차 면접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종합적합성 → ③1차 면접전형 → ④필기전형 → ⑤가점	

- 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모두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CPA·세무사', '지역전문(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채용목표제 적용

구분	적용 전형단계	적용 기준
양성평등 채용	2차 면접전형	특정 성별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3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
비수도권 지역인재	2차 면접전형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3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
이전지역(부산)인재	전형단계별	모집부문별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

- 선발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 채용목표제는 전형단계별 **선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에 한하여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이전지역(부산) 인재 인원을 포함하여 운영
- 양성평등 채용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체 선발예정인원(모든 모집부문 전체)의 35%에 도달할 때까지 **2차면접전형 종합적합성**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 이전지역(부산)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선발은 **'금융일반', '이공계', '박사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5명 초과**)에 한하여 적용
 - 이전지역(부산) 인재는 '금융일반', '이공계', '박사' 각 모집부문의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 최저점 **-3점 이내** 점수를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6 근무조건

(채용형태) 정규직 신입직원

* 직무 및 모집부문, 학력 등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직 5급(대졸 수준)**으로 입사

(근무지) 전국 영업점 또는 본점

- 지역전문 모집부문 최종합격자는 입사 후 **해당권역 즉시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단,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지역전문 모집부문별 해당 권역 안내

- * 충청권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 강원권 : 강릉, 원주, 춘천
- * 호남권 : 전북, 전남, 제주, 광주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연 봉) 약 5,093만원

* 알리오 공시 신입직원 초임 (군경력 및 전직 경력 등 미보유자 기준)

7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

구 분	가점 (만점 기준)	적용 단계				우대 요건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취업지원대상자	10% /5%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등 * 'CPA·세무사', '지역전문(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작은 경우 가점 적용 	
장애인	1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도 포함 	
사 회 적 배 려	저소득층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 공고마감일 기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2019.6.21.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공인노무사	3%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탄소중립 전문가	3%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자격증 보유자 	
안전 전문가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기술거래사	1%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거래사 자격증 보유자 	

데이터 전문가	1%	○	-	-	-	• ADP, DAP, SQLP, OCM,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보유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붙임2 반드시 확인)	1%	○	-	-	-	•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대학교 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또는 해외를 제외한 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또는 해외를 제외한 지역인 자
이전지역(부산) 인재 (붙임3 반드시 확인)	1%	○	-	-	-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을 기준으로 부산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 졸업(예정)한 자 * 부산 소재 고교 졸업후 타지역 대학 최종졸업(예정)한자는 제외
공공 기관	우수 청년인턴	2%	○	-	-	•(경험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체험형 또는 채용형 청년인턴으로서 1개의 공공기관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자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체험형 또는 채용형 청년인턴으로서 1개의 공공기관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 * 근무기간(60일)은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청년인턴 해당 여부는 근무 공공기관에 확인 *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기재부 「2024년 공공기관 현황」에 포함된 경우만 인정 * 우수인턴은 2023년 이후 선정된 자에 한함
	청년인턴 경험자	1%	○	-	-	
기술 보증 기금	최우수 청년인턴	3%	○	-	-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중, 최우수 또는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 '23년 선정된 우수인턴 중 '24년 정규직 우대가 명시되었거나, '24년 이후 최우수 우수인턴에 선정된 자에 한함
	우수 청년인턴	2%	○	-	-	
박사	-	-	-	필기 면제	-	• 정보통신·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기계, 화공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박사)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세무사	-	-	-	필기 면제	-	•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CPA세무사)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변호사·변리사	-	-	-	필기 면제	-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 법무채권관리(변호사·변리사)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 및 입사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하여 인정
- 가점 항목은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하나만 부여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모집부문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외 1개 가점 추가 인정
- 우대사항 비해당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자로 기재 후 합격한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입사 후 근무지 배치 시,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우선 배치** 단,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전국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부산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는 입사지원서에 '이전지역 인재' 기재 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내용 기재(접수마감일 이전까지 발급)** 및 해당 증명서 전형 중 제출 (추후 졸업예정증명서 미제출 또는 발급 불가 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부산이 아닌 지역 대학교 졸업예정자('25.2월)**는 **이전지역 인재 비해당**(해당자로 기재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부산) 인재 판단 기준]

-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 “대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예시)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부산이외)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인재 (X), 비수도권 지역인재 (O)**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인재 (O), 비수도권 지역인재 (O)**
-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졸업예정자 제외**) :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이전지역(부산) 지역인재)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예시)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부산이외) 소재 대학 재학·휴학·중퇴
→ **이전지역인재 (O), 비수도권 지역인재 (O)**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 소재 대학 재학·휴학·중퇴
→ **이전지역인재 (X), 비수도권 지역인재 (O)**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자 : “최종 졸업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8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 전형단계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만 인정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단, 위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생년월일 및 본인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전형별 제출 마감일(별도 안내)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접수할 수 있음**(전형 시 별도 안내)
- 본인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해당 여부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발급·준비·점검**하신 후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전형 중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 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학교 재학·중퇴·휴학자 :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증명서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또는 이전지역(부산) 인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예. 최종학교 본·분교 구분이 증명서에 없는 경우, 2개 이상 학교 재학·졸업의 경우 등) - 이전지역(부산) 인재 해당자는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퇴·휴학자의 경우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졸업(예정)·재학·중퇴·휴학자 : 대학교 성적 증명서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원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 - 편·입학자 : 편입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모두 기재) ● 기본증명서(상세) ● 신체검사서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자 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외국어성적증명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 사전 등록된 경우 미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가구 구성원 확인용)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명의)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 前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경력단절여성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 공공기관 우수 청년인턴 증빙 가능한 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최우수·우수 청년인턴 입사 추천서(정규직 우대가 명시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징계 내역 및 퇴사 사유 확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근무경력에 대해 제출 • 직업교육 수료증·이수 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교육사항'에 기재한 모든 직업교육 과목에 대해 제출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자격사항'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에 대해 제출 - 일부 자격증(CFA, FRM 등)은 시험합격통지서(사본, 이메일 출력) 제출 가능 • 전역예정증명서 •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	--

9 유의사항

- ▶ 본 계획(절차 및 일정)은 **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에 공고합니다.
-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kibo.incruit.com)의 FAQ를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고와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비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퇴직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채용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응시를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며,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기술보증기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관계인 제척·회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 ▶ 전체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사지원서의 주소,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성별 · 신체조건 · 학력 · 학교명 · 연령 · 가족관계 · 출신지 · 혼인 여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 전형 과정 중 기금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 등 포함
-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착오 · 누락 · 오기재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1·2차 면접전형 시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합격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재개발원 입소 시 **5급 수습 직원으로 임용**되며, **신입직원 입문과정 연수**를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기재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 및 합격자를 선발하며, 증빙서류는 추후 면접전형 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검증,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입사지원서 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모집부문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단계(서류전형 제외)마다 운영하고, 합격자의 다음 단계 응시 포기,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및 추가 합격될 수 있습니다.
 - * 필기전형 면제인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에 한하여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0% 선발 운영(그 외 모집부문은 서류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없음)
 - ** (필기전형, 1차면접전형)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 운영, (2차면접전형)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30% 운영 및 채용인원 3인이하 모집부문(지역전문, CPA·세무사, 변호사·변리사)의 경우 2차면접전형 시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75%로 운영
단, 박사 부문의 경우, 예비합격자는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고득점 순 선발
- ▶ 전형결과 모집부문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박사' 모집부문의 경우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등으로 학위취득 **증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25년 2월)이어야하며,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시 해당 학위취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학위수여 예정자라 하더라도 **'박사' 학위 보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 상 **채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채용비리에 관하여**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 목적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2. 신청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익일 이내
 3.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
 -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채용 공고명, 전형단계, 신고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4.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5.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절차 등에 대한 문의
 - 개인정보 관련 요구(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 저촉의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 평가기준, 전형결과 등과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채용비리 관련 이의신청제도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불가
-

-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금 규정과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1. 반환대상서류 : 면접전형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2.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3. 청구방법 : ‘붙임4’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recruit@kibo.or.kr)으로 신청
 4.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금 내규에 따라 파기
 5. 반환 제외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
기금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끝.

붙임 1

인정 자격증 목록

- 자격증은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합격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아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법무·채권관리

(단위 : 점)

득 점	20	17	12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기술사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CFA-Level 3)	미국공인회계사 (AICPA) 국제재무분석사 (CFA-Level 1,2)
법무· 채권관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
득 점	9	6	4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국제재무위험관리사 (FRM Part2 합격 포함) 국제공인관리회계사 (CMA)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여신심사역(CLO) 신용위험분석사(CRA) 데이터분석전문가(ADP)	투자자산운용사 기술신용평가사(2급이상) 신용분석사(CCA) 기사
법무· 채권관리	-	신용위험분석사(CRA)	신용관리사
득 점	2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사(3급) 데이터분석전문가(ADSP)		

- 전산

(단위 : 점)

득 점	20	15	10	5
전 산	CCIE CISSP CISA OCM	OCAJP CCNP ADP DAP SQLP 정보보안기사	OCJP(SCJP) OCPJP OCWCD CCNA OCP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ADSP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기준
- * 아래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참고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실 것**
* (예시) 건국대 충주 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양대 안산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2개 이상 대학의 재학 이력이 있는 경우

(1)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졸업(예정)인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2)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3)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4)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을 졸업(예정)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예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예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이전지역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부산)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 대학 졸업예정자란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
- ※ 대학 졸업예정자는 **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지역 인재(졸업 예정)를 선택하실 것
(반드시 발급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요 및 추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예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기준

□ 이전지역(부산) 학교의 범위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부산)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 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실 것**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이전지역 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서울·경기·인천 등)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이전 지역 인재로 포함
- (3)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

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지역(부산) 인재의 범위

이전지역(부산)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로 다음과 같음.

(1)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2)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자는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3)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 인재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 인재 제외

□ 이전지역(부산) 인재 해당여부 참고사례

(1) 본교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부산)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 해당
- 본교가 이전지역(부산)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인재에 해당
- * (예시)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는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 지역인재 해당

(2) 이전지역 대학과 타 지역 대학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3)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단 이전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 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5)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단 이전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6)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7)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붙임 4**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기술보증기금 인사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 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